멀티자판기 영업신고 논란?

관련부처 ➡ 유통기간이 1개월 이내 완제품 적용 판매시 영업신고 대상이다
산 업 계 ➡ 필요이상의 과당 규제로 마땅히 개선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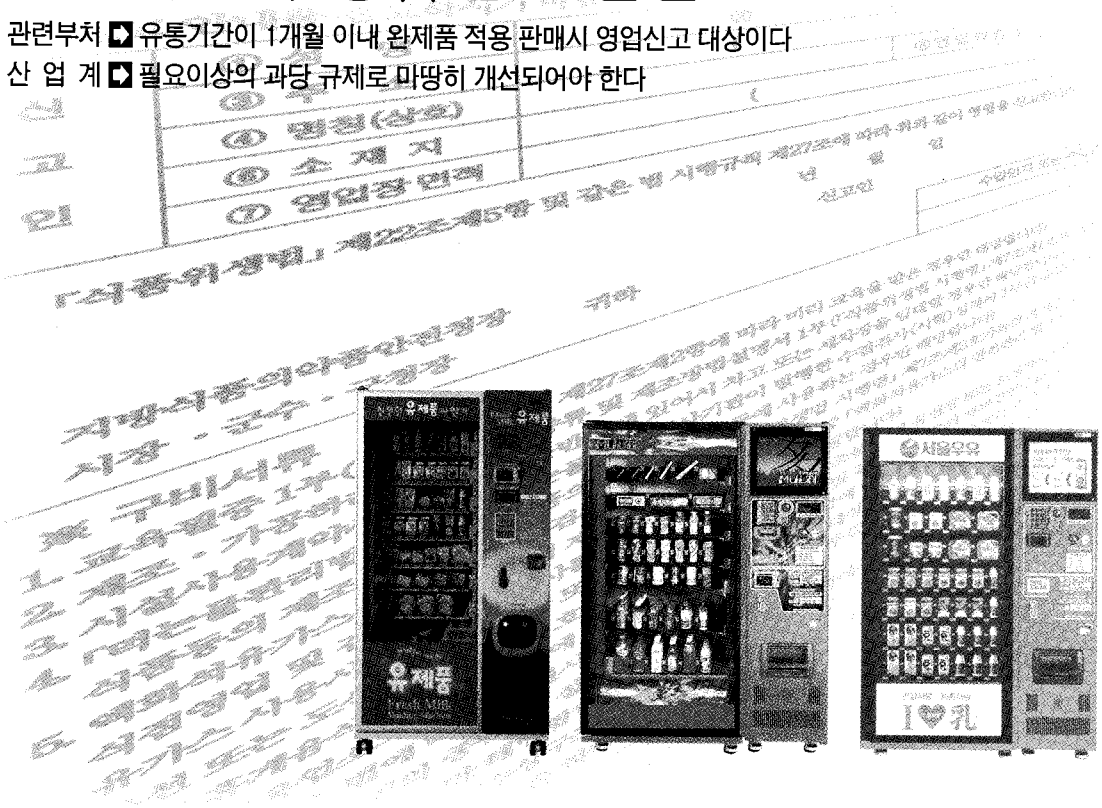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멀티자판기를 운영하는 K씨는 최근 뜻밖의 일을 당했다. 지자체의 한 공무원이 멀티자판기에서 판매되는 내용물의 일부가 유통기간이 1개월 이내라는 이유로 식품자판기 영업에 적용되니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이다.

"아니 영업신고는 커피자판기 같이 위생문제가 작용하는 품목이나 하는 거 아닙니까? 완제품을 판매하는 멀티자판기가 왜 영업신고 대상이 되어야 하죠?"

이렇게 따져도 봤으나 소용이 없었다. 담당 공무원은 식품위생법의 세부 식품자동판매기 영업기준을 들어 영업신고 적용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단호히 밝혔다.

최근 자판기 시장은 뜻하지 않은 논란의 중심에 있다. 그간 당연히 캔자판기나 멀티자판기 같은 품목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품목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내인 유제품을 판매하는 멀티자판기 같은 품목이 늘자 현행 식품위생법 기준을 적용해 영업신고 대상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적용대상으로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으로 규정하면서, '단지 유통기간이 1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어쨌든 현행 법규상에는 유통기간 1개월 이내의 완제품 적용할 때는 식품자판기 영업 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이 기준에 적용이 되면 커피자판기처럼 영업신고도 해야 하고, 위생교육도 받아야하는 운영자 의무가 따른다.

당연히 관련업계는 이러한 규정에 반발할 수밖에 없다. 완제품을 적용해 판매하는 자판기에 커피자판기와 같은 까다로운 의무규정을 적용시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유통업자가 유통기간을 준수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지, 별도의 영업신고 의무를 부과하면서까지 행정규제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현행 법규가 타당성이 충분하다면 당연히 산업계가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완제품을 판매하는 자판기가 필요이상의 과당규제로 산업발전의 발목을 잡히는 일은 당연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멀티자판기가 새로운 자판기 시장의 트랜드로 각광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개선의 당위성은 더 커진다. 원래 현행 식품위생법 기준이 마련된 것은 과거 유통기간이 지난 캔커피를 캔자판기에 일부 적용 판매한 것이 문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으로 알려 졌다. 과거의 경우 전체 적용되는 내용상품에 유통기간이 짧은 제품은 극히 일부분이었고, 만약 이런 제품이 식품위생법에 적용되는 것이 싫다면 해당되는 내용상품을 판매하지 않으면 그만이었다. 즉,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별다른 제약요인도 아니었던 것이다.

하지만 식품시장의 '웰빙' 바람으로 유제품 멀티자판기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다. 이제 가볍게 피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어찌할 수 없게 만드는 운영상의 애로점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완제품을 판매하는 자판기를 운영하면서까지 '울며 겨자 먹기 식' 으로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은 결국 시장 발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멀티자판기 시장의 정상적인 시장 발전을 위해서 이 관련규제는 개선이 되어야 한다. 산업계의 수준이 유통기간 준수문제로 영업신고를 해야 할 만큼 낮지 않다. 유통업자라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양심의 영역을 필요이상의 과당규제로 관리 감독할 수 있다는 발상은 어처구니가 없다.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에서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 7월 중순 정책기관인 보건복지가족부를 대상으로 「식품자동판매기 영업기준에 대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건의」 작업을 진행했다. 규제 완화의 당위성을 적극 역설하며 내년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반영해 줄 것을 적극 주장했다.

이번호 정책초점에서는 협회가 개정건의를 진행한 건의안 전문을 게재했다. 왜 이 필요 이상의 과당규제가 개선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식품자동판매기 영업기준에 대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건의

1. 관련 법률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09.3.25] [대통령령 제21371호, 2009.3.25, 일부개정]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 식품정책과)(02) 2023 - 7785

제7조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식품소분 · 판매업

나. 식품판매업

(5)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3조의2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22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4.22, 2005.7.27, 2008.6.20>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소의 소재지

3의2. 영업장의 면적

4.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 · 가공업을 하는 자가 추

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의한 식품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5. 제7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자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6. 냉장·냉동차량을 증감하고자 하는 경우(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운반업을 하는 자에 한한다)
7.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를 말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를 증감하고자 하는 경우(제7조제5호나목(5)의 규정에 의한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하는 자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0.7.27]

2. 현황

- 현재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의 적용 기준 중 완제품의 경우 모든 품목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기간 1개월 이내의 완제품은 적용시키고 있음으로 인해 최근 출시되는 유제품 자판기, 냉음료 자판기 같은 품목에 있어 큰 시장 발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들 자판기가 판매되는 내용상품 중 유통기간 1개월 이내의 완제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식품자판기 영업에 해당되어 영업신고, 위생교육 등의 까다로운 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운영자들 및 관련 제조업체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3. 문제점 및 개정 당위성

□ 완제품을 적용 판매하는 식품자판기도 영업신고를 하는 것은 과당 규제

- 음료, 유제품 등의 완제품을 적용 판매하는 멀티자판기, 냉음료자판기 등의 자판기 품목은 유통기간이 각기 다른 다양한 제품을 혼합해서 판매하고 있는 실정
- 판매되는 완제품 중 유통기간이 1개월 이내의 제품이 있다고 해서 식품위생법에 적용이 되어 영업신고도 하고, 위생교육도 받아야 하는 것은 과당 규제

□ 유통기간의 관리는 유인판매와 무인판매나 똑 같이 이루어져야 할 사안

- 완제품의 유통기간 관리는 무인 판매하는 자판기라고 해서 소홀히 이루어지거나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가 될 수는 없음
- 완제품의 유통기간 관리는 판매자의 양심에 따라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위반시에는 관계기관의 지도 단속에 따라 처벌 및 시정이 이루어져야할 사안이지, 자판기만 유독 별도의 영업신고 같은 과중한 행정규제가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임
- 유통기간 1개월 내의 완제품을 가판대 및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것과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 수는 없음. 자판기 운영자도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전문적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유통기간 관리는 철저히 진행하는 것이 기본

□ 현행 자판기 관련 식품위생법은 커피자판기를 중심으로 맞추어져 있는 것이지 완제품을 판매하는 자판기에도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현행 식품위생법은 위생문제가 민감하게 작용하는 커피자판기를 중심으로 마련이 된 법으로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업종별 시설기준' 등은 커피자판기를 대상으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음
- 현재 자판기 위생교육의 경우도 커피자판기를 대상으로 한국휴게실업중앙회가 실시를 하고 있는 현실로 기타 자판기에 대한 위생교육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

- 이런 현실에서 유통기간 1개월 이내의 완제품을 적용 판매하는 멀티자판기, 냉음료자판기의 경우 영업신고에 따른 위생교육의 의무가 적용된다면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
  - 커피자판기 위생교육에 완제품 판매업체가 참가하여 교육을 받아야하는 상황 발생
  - 설령 완제품 판매업자에 대한 해당 교육 시스템이 마련이 된다 해도 바쁜 생업을 가진 영업자가 참가하여 '유통기간을 준수하라'는 식의 교육밖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발생

□ 해외에서도 유례가 없는 사례

- 우리보다 자판기 산업이 발달한 미국, 일본, 유럽 같은 곳에서도 유통기간이 짧은 유제품 같은 것을 적용해 판매하는 멀티자판기, 냉음료자판기 같은 품목에 대해 영업신고 및 위생교육 위무 같은 과당규제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산업 발전의 큰 저해 요인으로 작용

- 최근 식품의 웰빙 동향과 초·중·고등학교내 탄산음료 판매 규제로 유제품 등의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멀티자판기가 시장 확대되고 있는 추세. 아울러 편의점의 인기 상품을 판매하는 '미니 편의점 식' 멀티자판기도 설치가 늘어나고 있음.
- 사회적 니즈에 의해 유통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이들 자판기들이 단지 유통기간 1개월 이내의 내용상품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영업신고와 위생교육의 의무가 적용이 된다면 큰 시장 발전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 멀티자판기 운영자들은 기본적으로 유인유통을 하면서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복수사업자인 경우가 많아 과다한 행정규제가 작용하면 자판기 운영사업을 꺼리거나 포기하는 상황들이 속속 발생하게 됨

4. 개선 방향

□ 완제품을 판매하는 자판기의 경우 일괄적으로 식품위생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 유통기간이 1개월 이내라고 식품위생법에 적용이 되고, 1개월 이상은 제외가 되는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은 자판기 운영 분야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과당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완제품을 판매하는 자판기의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식품위생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주어야 할 것임.

▶법령개정방안 예시

기 존	개 정
제7조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식품소분·판매업 나. 식품판매업 (5)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식품소분·판매업 나. 식품판매업 (5)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완제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